

2020년 4월 3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(044-201-2311), 사무관 문원탁(2317)/ 제공일: 4월 2일(총 6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퇴비 부숙관리,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

= 퇴비 부숙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일정관리 자가진단표 제작·배포 =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림축산식품부는 3.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맞추어 축산 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'자가진단표'를 제작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, 생산자단체 등에 배포
 -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퇴비 부숙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 절차 등을 연간·월별·일별로 정리하여 축산농가에게 안내
- ◆ 자가진단표는 퇴비 부숙관리, 장비 임대, 퇴비사 확보 등 세가지 분야에 대해 농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점검·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
 - ① 퇴비 부숙 관리
 - * 교반시점 결정(교반 4~5일전) → 톱밥, 왕겨 등 구매신청(교반 3일전) → 톱밥 등 살포(교반 1일전) →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(당일)
 - ② 장비 임대
 - *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대 신청(매월초),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(연 1회) →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장비 임대일자 배정(신청후 5일 이내) →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료 납부(장비 임대 전일) → 장비 인수(교반당일) → 세척·소독 후 장비 사용 및 반납
 - ③ 퇴비사 확충
 - * 설계사무소 계약(3개월 전) → 실시 설계(2개월전) → 지자체 건축부서에 인허가 서류 제출(2개월전) →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, 퇴비사 시공(5~6주 전) → 준공검사 신청 → 지자체에서 준공검사 필증 발급(15일 이내) → 퇴비사 사용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46일(월) 퇴비부숙도 시행(3.25)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'자가진단표'를 제작하여 축산농가, 농축협,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.

○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,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,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·월별·일별로 정리하고 있으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**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** =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'퇴비 육안판별법'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.

※ 사육규모 1,500m² 미만 농가는 월 1회, 1,500m²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함

i) (**교반 4~5일 前**)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을 활용하여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수분정도, 부숙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교반 시점 결정

ii) (**교반 3일 前**) 축사 깔짚 및 퇴비 더미에 수분이 많은* 경우 톱밥, 왕겨 등을 판매업체에 구입 신청

* 깔짚 및 퇴비더미를 손(비닐장갑 등 활용)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분뇨 및 물기 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 수분 70% 이상

iii) (**교반 당일 또는 1일 前**) 톱밥 수령 후 축사 바닥·퇴비더미에 살포

iv) (**교반 당일**) 톱밥 살포된 지점 위에 미생물 살포 후 관리가·트랙터로 교반

② **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** =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.

- 농가는 월 1~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,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.
- 시·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,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면적,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.
-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장비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다.

* 민간업체 등을 통한 장비 임대도 동 방법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짐

- i) **(농가, 월초)** 매월 초,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해야 함. 첫 신청 농가는 '농업인 안전보험*'을 연 1회 가입해야 함
 - * 농업인 안전보험은 개인 또는 농업인 전체 일괄 가입 등 지자체별 가입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가입 권장
 - ii) **(시·군 농업기술센터, 5일 내)**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교반장비 및 임대일자 배정
 - iii) **(농가, D-1)** 장비 임대 전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료 납부
 - iv) **(농가, D-day)** 교반당일, 교반장비를 인수하고, 농장 출입구에서 장비를 세척 및 소독*. 사용 후에도 세척 및 소독 후 반납
 - * 세척·소독이 안 될 경우, 농장에 가축 질병이 유입되어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- 영세·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부숙과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.

③ **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** =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, 공동자원화 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·증축해야 한다.

○ 퇴비사의 신축*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, 인허가 가능 여부,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.

* 고정건축물(일반건축물), 연면적 100㎡ 이상 가설건축물, 연면적 100㎡ 미만 가설건축물

i) **(3개월 前)** 퇴비사 신·증축을 위해 3개월 전에 설계사무소와 계약하고, 실시설계* 시작

* 전문 설계·시공업체 등 계약 또는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(가설건축물 제외) 활용

ii) **(2개월 前)** 인허가*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

* 퇴비사 설치 시 축사와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 필요

iii) **(5~6주 前)**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후 퇴비사 신축 시공

iv) **(완료)** 퇴비사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,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(15일 이내)되면 퇴비사로 사용

□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“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.” 면서,

○ “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사 퇴비 관리 절차

퇴비 부숙 관리	퇴비 수분 관리	수분 60~65% 유지 (70%* 이상일 경우 톱밥, 왕겨 추가 살포) *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분뇨 및 물기가 많이 나옴
	미생물 살포	교반작업 전 또는 수시 살포 * 물 1톤에 미생물 2~5ℓ 혼합 후 3.3㎡(1평) 당 1ℓ 살포
	교반 관리	월 2회 이상 교반(주 1회 권장) * 깔짚 및 퇴비더미 부숙 정도에 따라 교반 횟수 결정
퇴비 부숙도 확인	부숙 정도 확인 (농가, 육안판별법)	육안판별 결과, 배출시설 1,500㎡ 미만은 40점 이상, 1,500㎡ 이상은 60점 이상 부숙도 검사 의뢰 * 신고규모 미만 연 1회, 허가 규모 이상 연 2회 검사 의무화 * 신고규모 : 소 100~900㎡미만, 양돈 50~1,000㎡미만, 가금 200~3,000㎡미만
	부숙도 검사 의뢰 (농가→농업기술센터)	퇴비 500g 채취 및 검사의를뢰서를 작성·송부 * 퇴비더미 5~10군데에서 약 2kg 이상의 시료 채취후 원 추 4분법을 2~3회 실시 후 500g 채취
	부숙도 검사 결과 확인	1,500㎡ 미만은 '부숙 중기' 이상, 1,500㎡ 이상은 '부숙 후기' 또는 '완료' 적합 부숙도 검사 결과서 발급(농업기술센터)
	농경지 퇴비 살포	

축산농가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한 월간 일일 점검사항

(2020년 월)

월(月)	○ ×	화(火)	○ ×	수(水)	○ ×	목(木)	○ ×	금(金)	○ ×	토(土)	일(日)
1		2		3		4		5		6	7
◆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(연 1회)		◆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법을 통해 부숙도 여부 자가 판단하는 날 ▷ 퇴비 부숙도 상태를 보고 톱밥 및 퇴비 교반 여부 판단		◆ 축사 내외부 청소 하는날 ▷ 축사 내·외부 소독방역 ▷ 축사 외부 웅덩이, 잡초 제거 등 청소		◆ 지자체 장비 임대 시 - 교반장비 임대 신청하는 날 (농가 → 농업기술센터, 3~5일 전 신청) ◆ 민간 장비 임대 시 - 민간 장비 임대 신청(농가 → 장비업체 농기계 보유농가)		◆ 톱밥, 왕겨 등 신청하는 날 (농가 → 톱밥 판매업체 등)			
8		9		10		11		12		13	14
◆ 지자체 장비 임대 시 - 교반장비 임대료 납부(농가 → 기술센터) ◆ 민간장비 임대 시 - 임대료 지급 및 장비 인수 - 농장내 반입 시 철저한 소독 후 입고		◆ 톱밥, 왕겨 등 수령하는 날		◆ 축사 내외부 청소 하는날 ▷ 축사 내·외부 소독방역 ▷ 축사 외부 웅덩이, 잡초 제거 등 청소		◆ 지자체 장비 임대 시 - 안전교육 이수 후 교반장비 수령(기술센터 → 농가) - 농장내 반입 시 철저한 소독 후 입고(농가) ◆ 퇴비사 및 축사 내 교반하는 날 - 미생물 살포 → 교반 → 장비 세척소독 후 지자체 반납					
15		16		17		18		19		20	21
		◆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육안 판별법을 통해 부숙도 여부 자가 판단하는 날 ▷ 퇴비 부숙도 상태를 보고 톱밥 및 퇴비 교반 여부 판단		◆ 축사 내외부 청소 하는날 ▷ 축사 내·외부 소독방역 ▷ 축사 외부 웅덩이, 잡초 제거 등 청소		◆ 지자체 장비 임대 시 - 교반장비 임대 신청하는 날 (농가 → 농업기술센터, 3~5일 전 신청) ◆ 민간 장비 임대 시 - 민간 장비 임대 신청(농가 → 장비업체 농기계 보유농가)		◆ 톱밥, 왕겨 등 신청하는 날 (농가 → 톱밥 판매업체 등)			
22		23		24		25		26		27	28
◆ 지자체 장비 임대 시 - 교반장비 임대료 납부(농가 → 기술센터) ◆ 민간장비 임대 시 - 임대료 지급 및 장비 인수 - 농장내 반입 시 철저한 소독 후 입고		◆ 톱밥, 왕겨 등 수령하는 날		◆ 축사 내외부 청소 하는날 ▷ 축사 내·외부 소독방역 ▷ 축사 외부 웅덩이, 잡초 제거 등 청소		◆ 지자체 장비 임대 시 - 안전교육 이수 후 교반장비 수령(기술센터 → 농가) - 농장내 반입 시 철저한 소독 후 입고(농가) ◆ 퇴비사 및 축사 내 교반하는 날 - 미생물 살포 → 교반 → 장비 세척소독 후 지자체 반납					
29		30		31		축산농가 여러분께서는 농장 내에 비치하여 일일 해야할 일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 주세요. - 월간 일일 점검표는 지자체, 지역농축협 담당자가 현장 출장 시 농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. - 지자체 및 지역농축협 담당자께서는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농가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고, 현장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				◆ 축사 내외부 청소 하는날 ▷ 축사 내·외부 소독방역 ▷ 축사 외부 웅덩이, 잡초 제거 등 청소							

퇴비 부속 관리를 위한 월별 점검 사항

(뒷 면)

구분		D+1월	D+2월	D+3월	D+4월	D+5월	D+6~12월	
교 반 장 비 비	장 비 구 입	농가 직접 구입 (자체자금)	농기계 판매업체와 계약	대금지급 및 장비 인수 ⇨ 농장 입구에서 장비 소독 후 반입	농장 내 장비 활용			
	용자 이차 보전 (농협)	농기계 구입지원 신청(농가 → 시군 농축협)	사업대상자 선정(시군 농축협)	용자 대출서류 제출(농가 → 시군 농축협)	정산 및 장비 인수 ⇨ 농장 입구 에서 장비 소독 후 반입	농장 내 장비 활용		
	정부 및 지자체 보조 지원 * 시설현대화, 분뇨처리지원사업,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	사업 신청(농가 → 시군 축산과)	사업대상자 선정(시군 축산과)	용자 대출서류 제출(농가 → 시군 농축협)	정산 및 장비 인수⇨ 농장 입구 에서 장비 소독 후 반입	농장 내 장비 활용		
	농기계 은행 (농협)	사업 신청(농가 → 시군 농축협)	사업대상자 선정(시군 농축협)	임대료 분할 납부 및 장비 인수 ⇨ 농장 입구에서 장비 소독 후 반입	농장 내 장비 활용(타인 임작업 50% 이상 사용 必)	내용 연수 경과 후 소유권 이전 ▶지역농축협 역할 : 타인 임작업 시 교반 장비가 부족한 축산 농가 우선 지원(농가별 월별 임대 작업일 지정 안내)		
	농기계 임대사업소 (농업기술센터)	▶매월 같은 사이클로 운영 : 농기계 임대신청(농가 → 농업기술센터, 매월 2회) ⇨ 사업대상자 선정(농업기술센터, 매월 2회) ⇨ 임대료 납부 및 장비 인수(농업기술센터, 매월 2회) ⇨ 농장 입구에서 장비 소독 후 농장내 교반 작업 ⇨ 농장입구에서 세척·소독 후 농업기술센터에 반납 ▶지자체 역할 : 봄철 경종농가와외의 중복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별 농기계임대 배정일 알림 체계 구축 ⇨ 지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유현황을 확인하고, 농가별 희망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농가별로 농기계 임대 배정일 안내(예시 : A농가 - 매월 1·16일, B농가 - 매월 2·17일, C농가 - 매월 3·18일 등)						
	민간임대 (장비업체, 장비 보유농가)	▶매월 같은 사이클로 운영 : 장비 임대 계약(농가 → 장비업체, 농가, 매월 2회) ⇨ 임대료 지급 및 장비 인수(매월 2회) ⇨ 농장 입구 에서 장비 소독 후 농장내 교반 작업 ⇨ 농장 입구에서 세척·소독 후 장비 반납 ▶지자체·지역농축협 역할 : 장비업체, 농기계 보유농가, 농기계은행 임대농가 현황을 파악하고, 민간임대 희망농가별로 장비 보유업체·농가와 연계 지원시스템 사전 구축						
위 탁	퇴비유통 전문조직 (농축협, 영농조합법인)	▶매월 같은 사이클로 운영 : 위탁관리 계약체결(유통조직 → 축산·경종농가, 연 1회) ⇨ 월 2회 이상 교반관리 ⇨ 위탁관리 비용 지불(축산농가 → 유통조직) ⇨ 가축분뇨퇴비 육안판별법을 통해 부숙도 자가 진단(월 1회) ▶지자체 역할 :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·고령농, 장비 부족 농가 중심으로 지원(미 참여 농가 중 장비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가별로 사전 임대 배정 운영) -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없는 시군은 농가에 대해 장비 구입 또는 임대 등 방법 안내(장비 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가별로 사전 임대 배정 운영)						
퇴 비 사	신 · 증 축	연 접 부 지	고정 건축물	▶설계업체 계약 및 실시설계 (30일 소요) *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 활용시 생략	▶인허가 서류 작성·신청 (건축 허가신고, 배출시설 변경신고)	▶착공신고 및 시공업체 계약	▶공사완료(60일 소요) -준공공사 신청(축산, 환경)	▶준공필증 교부(15일 소요) 후 퇴비사 사용
			가설 건축물 (연면적 100㎡ 이상)	▶설계·시공업체 계약 및 실시설계	▶가설건축물 신고(건축부서) ▶배출시설 변경 신고(환경부서)	▶가설건축물 축조 ▶배출시설 신고 증명서 발급(환경 부서, 5일 소요)	▶퇴비사 사용	
			가설 건축물 (연면적 100㎡ 미만)	▶설계·시공업체 계약 및 실시설계	▶배출시설 변경 신고(환경부서) ▶배출시설 신고 증명서 발급(환경 부서, 5일 소요)	▶퇴비사 사용		
		이격부지		▶농지전용 협의서류 추가 제출 (건축·환경부서 의제 처리)				
	위 탁	퇴비처리업체 (민간퇴비장, 공공처리시설, 공동자원화시설, 공동 퇴비사)	▶위탁처리 계약체결 (농가 → 위탁업체)	▶배출시설 변경신고(환경부서) ▶배출시설 신고 증명서 발급(환경 부서, 5일 소요)	▶배출시설 변경신고 후 매월 같은 사이클로 운영 : 위탁처리 요청(농가 → 위탁처리업체) ⇨ 분뇨 처리(위탁처리업체 → 농가) ⇨ 수거비 지불(농가 → 위탁처리업체)			
▶ 퇴비사 신증축을 제한하는 16개 시군구 조례 규제 완화 추진(3개 시군 기 개정, 8개 시군 개정·예정, 5개 시군 개정 검토 중), 퇴비사 부족 농가는 지역 내 퇴비처리업체와 연계하여 위탁처리 지원								